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Policy and Law Report _Vol.192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3.6.26.~7.2.) -

July 3, 2023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③ 법률 발의안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5. 지난 주(6/26～7/2) 법무법인(유)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과학 기술정보 통신부	•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차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를 주재하고,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착수보고회를 가짐 'K-클라우드 프로젝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 반도체를 개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함 이를 통해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예정)*을 투자하여 국산 AI반도체를 3단계(NPU → 저전력PIM → 극저전력PIM)에 걸쳐 고도화하고, 단계별로 데이터센터에 적용하여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및 PIM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현재 예타 기준 < 'K-클라우드 프로젝트' 개요 >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산 NPU 실증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 당초 계획 대비 2배 규모*로 추진** *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조성, 광주) '24년까지 10PF3)→ 19.95PF로 연산 용량 확대 (AI반도체 Farm 구축 및 실증, 민간) '25년까지 10PF → 19.95PF로 연산 용량 확대 **② AI반도체·클라우드社, 국내 AI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글로벌 진출 의지 표명** **③ 'K-클라우드' 추가 기술개발 위한 1조원 규모 예타 사업 기획 중** **④ 산·학·연이 똘똘 뭉쳐 'K-클라우드' 성공을 위한 협력 선언문 발표**	2023-06-26
	• **디지털 재난관리 강화를 위한 「디지털 안전 3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재난관리 대상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선정 기준 확정 - 보호조치 대상 데이터센터 시설 기준 설정, 재난 시 보고 방법 마련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등 이번 시행령 개정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2.10.15.)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지난 1월 3일 개정된 「방송통신발전법」,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2023-06-27

부처	내용	일시
	하위 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 방안(3.30.)」의 후속조치로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특히, 그동안 재난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재난의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음 **<「방송통신발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이하 '데이터센터 사업자')이 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포함되도록 「방송통신발전법(제35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자는 포함하되 대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을 마련함 먼저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이거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인 사업자를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재난관리 적용대상으로 정함** 그리고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경우, 운영·관리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이하 '데이터센터')의 전산실 바닥면적*이 22,500㎡ 이상이거나 수전(受電)설비의 용량**이 40MW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주요방송통신사업자로 포함**하게 됨 * 서버 등 정보통신설비를 설치·운영 가능한 공간 ** 데이터센터 설비 운용을 위해 한국전력과 계약하여 사용가능한 최대전력용량 또한,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디지털 재난에 대비한 관리조치를 수행하여야 하는 중요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시, 데이터센터의 경우 전산실 바닥면적과 수전설비의 용량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의 중요통신시설 지정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도록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전산실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데이터센터를 보호조치 의무대상으로 설정함** 다만,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 중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시 신규 추가된 자가사업자*는 소규모 사업자와 비 IT사업자(제조업 등)의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매출액 및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보호조치 의무를 적용받게 됨 * 자사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 (매출액)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이용자 수) 소관 정보통신서비스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부처	내용	일시
	또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제46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위임한 **데이터센터 시설의 재난·재해 발생 시 보고 방법, 데이터센터의 배타적 임차사업자*에 대한 조치의무의 세부내용 등을 마련함** * 데이터센터의 임차구역에서 ① 보호조치에 필요한 설비(예 : 배터리·UPS 등)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② 출입을 전면통제하여 임대사업자의 보호조치 이행을 제한하는 임차사업자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의무 관련 자료 제출요청 규정이 지난 1월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7제4항)」 개정시 법률로 상향 입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 과기정통부는 "이번 디지털 안전 3법(방송통신발전법·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시행 및 하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기간통신 분야 중심의 디지털 위기대응체계를 부가통신서비스 및 데이터센터에 적용함으로써, 디지털 전 분야에 걸쳐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재난관리 의무대상임을 사전 통보하고, 사업자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7월말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 의무대상 사업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임**	
	• **전기차 무선충전기기, '설치장소별 허가 → 기기 인증'으로 규제 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차 무선충전시설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선충전기기 관련 규제를 현행 설치 장소별 허가에서 제품 모델별 인증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위해 관련 4개 고시*를 일괄 개정하여 6월 30일부터 시행 발표함** *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 중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설비 및 기기」, 「전자파적합성 기준」, 「전자파강도 측정기준」,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가 작년 11월에 발표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 '22.11.)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전기차 무선충전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설치할 때마다 개별 장소별로 전파응용설비 허가를 받아야 해 시설운영자의 부담이 컸으며, 이러한 규제가 무선충전 산업 활성화의 장애물이 되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용 11 kW 이하의 무선충전기기의 경우, 허가 없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은 동일 모델 제품을 누구나 원하는 장소에서 설치·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무선충전기기의 설치·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이동수단 전동기기용(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무선충전기기(200W 이하)도 허가 없이 기기인증을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023-06-29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자원부	• **해외인증 애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 발표** 국가기술표준원은 의료·바이오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인증 종합지원 전략」을 발표함 해외인증은 수출애로 상담의 20%를 차지하는 3대 애로 중 하나로,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인증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 비용·시간 부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러한 애로를 해소코자 정부는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5.16.)를 통해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① **해외 시험·인증기관과 상호인정 확대,** ② **해외인증 정보 원스톱 제공,** ③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을 결집을 목표로 하는 종합지원 전략**을 마련함 비전: **해외인증 애로 해소를 통해 글로벌 시장 확대** 추진 목표: ◇ **(상호인정) 비용·시간 단축을 위해 상호인정 확대** ▸71개 인증 141개 품목 → **83개 인증 171개 품목** ◇ **(지원허브) 해외인증 정보·지원 원스톱 제공** ▸121개국 **583개 해외인증 정보** 통합 제공, **50대 품목** 가이드북 **단계적 발간** ◇ **(역량결집) 해외인증 지원단을 통한 범부처 역량 결집·해소** ▸**1,000개사** 대상 지역 순회 **설명회, 100개사** 현장 **컨설팅, 30개사 심층진단** 세부 추진 과제: **추진 과제** **1. 수출업계 해외인증 국내 취득 확대** — ❶ 국내·외 기관간 **상호인정 품목 30개 확대** ❷ 지역별 해외인증 지원 **기반 확대** **2. 통합 정보 제공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 — ❶ 해외인증 **통합 정보 원스톱** 제공 ❷ 해외 기술규제 **신속 대응** **3. 수출기업 맞춤형 집중 지원** — ❶ 찾아가는 **설명회** 및 맞춤형 **자문·인력양성** ❷ 기업 **제품 개발 단계별 밀착 지원** **4. 해외인증 지원체계 구축** — ❶ 해외인증 지원 **거버넌스 강화** ❷ 애로 통합관리 및 신속 해소 프로세스 구축	2023-06-29

부처	내용	일시
보건 복지부	• **<u>'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u>** - 1단계 사업으로 2024년부터 5년간 총 6,065.8억 원 투자 보건복지부 등은 100만 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개방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된다고 밝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은 정밀의료 기술개발 등 의료혁신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을 위해 100만 명 규모의 임상정보, 유전체 등 오믹스 데이터, 공공데이터, 개인보유건강정보를 통합하여 구축·개방하는 연구개발(R&D) 사업으로, 100만 명 규모의 대규모 구축에 앞서 2.5만 명 규모로 지난 2년여간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20.5.~'22.12.)이 추진된 바 있음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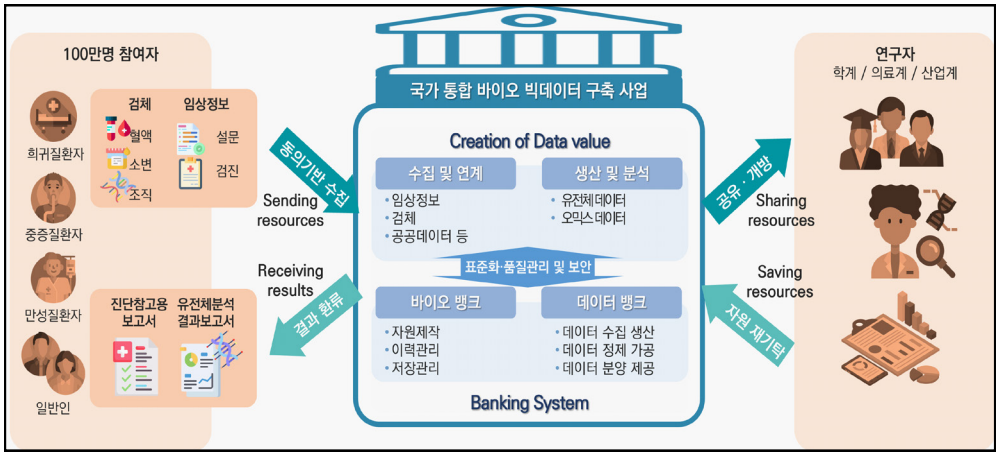 지난 6월 29일(목)에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9년을 2단계(5년+4년)로 분할하여 우선 77만여 명의 바이오 데이터를 구축·개방하는 1단계 사업을 향후 5년간('24년~'28년, 사업비 6,065.8억 원) 추진키로 함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에 기반하여 개인 중심의 통합 데이터가 구성·관리되며, 대학 및 병원, 기업의 연구자들은 정밀의료 기술, 혁신 신약, 디지털 헬스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연구 목적에 맞는 한국형 바이오 빅데이터를 필요한 양과 종류만큼 제공될 예정임	2023- 06-29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령 *해당 법령안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 재정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3.6.27.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간이과세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 또는 결제를 중개하는 경우 관련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월별 거래 명세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제78조,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8호의5서식 신설)**	2023- 06-30
산업 통상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6.27. 시행) 수소전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업의 총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역량 있는 수소전문기업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하여 총매출액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기업의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포함**되도록 하고, **총매출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기업의 경우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의 비중을 종전에는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40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제2조제1항제4호)**	2023- 06-27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3.7.1. 시행)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기업의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관련 해외 우수인력의 발굴 ·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개정(법률 제19205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	2023 06-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따라,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자는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해외진출 전략 수립에 필요한 지도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 · 인력 등의 지원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해외 우수인력 발굴 · 유치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우수인력에게 구인 · 구직 등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9조의2 신설, 제42조의2 등)**	
고용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23.6.27. 시행. 다만,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호의2 및 제117조제10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기관에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부터 받은 '화학물질확인 정보'를 추가하여 사업장에서의 화학물질 취급 현황 파악을 통한 화학물질 급성중독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전 제출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동일하게 1천만원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 시 3백만원, 2회 위반 시 6백만원으로 차등 부과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제고하되, 고층 건축물이나 터널 · 댐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는 과태료 기준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소방안전관리자, 기술지도사, 보건교육사, 관세사 등 다른 국가자격의 경우처럼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에 대해서도 자격증을 발급하여 그 국가자격을 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8조의2, 제105조제3항, 제115조제52호의2 신설, 제117조제10호 등)**	2023-06-27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2023.7.1.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전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8928호, 2022. 6. 10. 공포, 2023. 7.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593호, 2023. 6. 27. 공포, 2023. 7. 1.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근로자와 노무제공 특성이 다른 노무제공자도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근로시간 관련 서류를 부분휴업급여 청구 시 제출서류에서 삭제하고, 살수차류, 굴절식 · 직진식 카고크레인류 및 고소작업자동차류를 운전하는 사람을 노무제공자**	2023-06-3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에 포함시키며, 노무제공자가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보수 외에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그 임금을 평균보수에 산정하는 절차를 정하고,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지급 등에 관하여는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제22조제1호, 제44조제1호, 제3장의2 신설, 제64조의3 등)**	
국토 교통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령」**(2023.6.27. 시행)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선도지구에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함으로써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개발부담금을 물납(物納)하는 경우 부과 금액과 물납부동산 가액과의 차액을 종전에는 현금으로만 내도록 하던 것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도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제1항제4호, 제21조의2제1항제2호나목, 제22조제3항 등)**	2023- 06-27
금융 위원회	•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2023.6.27. 시행) 국제보험회계기준(IFRS 17)의 시행에 따라 보험회사의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 등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공포, 2023. 7. 1. 시행)됨 이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등을 정하고, 선임계리사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통신수단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추가하고, 보험협회의 업무에 보험사기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 홍보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보험 모집을 위한 통신수단에 인터넷 화상장치 추가 (제43조제4항 신설)** –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보험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 보험회사가 구축한 인터넷화상장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보험 모집 시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함 **②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당시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 마련 (제58조의2 신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 중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 등이 붙는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발행	2023- 06-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당시에 미리 정하는 예정사유의 기준으로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였거나 발행하려고 하는 보험회사나 회사의 주주 등 조건부증권의 발행에 관련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통상적인 노력으로 변동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예정사유가 충분히 공시 · 공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정함 **③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시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 등 규정 (제58조의3 신설)** –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주식교환계약서에 작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 등을 정하고, 주권비상장보험회사와 상장금융지주회사가 각각의 본점 소재지에 등기해야 하는 사항으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등을 정하는 등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 **④ 보험사기행위 방지를 위한 교육 · 홍보 업무 등을 보험협회 업무에 추가 (제84조제9호 및 제10호 신설)** –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 홍보 업무와 보험사기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업무를 보험협회의 업무에 추가함 **⑤ 선임계리사 지원을 위한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 마련 (제96조의2 신설)** – 선임계리사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명 이상 두도록 하되, 책임준비금 등의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보조인력을 추가하여 두도록 하고,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의 적정성 검증 · 확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을 갖추도록 함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 외국인에게 기술이전 및 국내 사모펀드를 통한 기술보유기관 인수·합병 등 기술유출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현행법에는 이를 규제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또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국가핵심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에도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으나, 목적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술유출 대응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함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경우도 처벌하여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이직알선을 예방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외국인",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해외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의 개념을 법률에서 정의함 (안 제2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2 신설)** **③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9조의3 신설)** **④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심의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심의결과를 통지받기 전까지 수출이행이 금지됨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11조 개정)** **⑤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에 대한 해외·인수합병시 대상기관과 외국인이 공동으로 승인 신청하도록 하고, 국가안보 뿐 아니라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까지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1조의2)** **⑥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및 해외인수·합병 승인 또는 신고수리시 부과된 조건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의3 신설)**	2023-06-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⑦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와 관련하여 개선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⑧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기술유출을 소개·알선·유도한 행위도 침해행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 (안 제14조)** **⑨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구성요건을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변경하여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도록 함 (안 제36조)** **⑩ 제9조의2에 따른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3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신청을 아니한 경우 등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되도록 함 (안 제39조)** **⑪ 국가핵심기술 대상기관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있도록 함 (안 제40조)** ※ 의견 제시기간 : 2023/6/28(수)~8/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기술안보과)로 제출	
국토 교통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동산개발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 취소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83호, 2023.04.18. 공포, 2023.10.19.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로 상향된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립인가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업 등록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해소**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개발업 등록 면제 기관 확대 (안 제3조제2항)**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자산관리공사법」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설립 근거 법령에 따른 부동산개발의 원활한 수행 등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을 부동산개발업 등록의 면제 기관으로 추가함 **② 협회의 설립인가 절차 규정 (안 제21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는 절차를 추가함	2023- 06-2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 삭제 (안 제22조) – 협회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법률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기존의 규정을 삭제함 **④ 민감정보 처리근거 마련 (안 제25조의2)** –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범죄경력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6/28(수)~8/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로 제출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업 외에도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대학 및 연구소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게 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입주기업과 기업도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23.4.18. 일부개정)하였음 이에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인 연구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업도시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대상이 되는 연구기관을 규정 (안 제35조제6항 신설)** ※ 의견 제시기간 : 2023/6/29(목)~8/8(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로 제출	2023-06-28
중소벤처기업부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위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일 공포, '23.9.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삭제**	2023-06-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② 벌점의 부과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18조의2, 안 별표3) **③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을 규정함 (안 제18조의3)** **④ 벌점의 부과기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하도록 규정함 (안 제27조의2제3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6/27(화)~8/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로 제출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위탁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3.3.28일 공포, '23.9.29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 및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존 수·위탁 분쟁(사전)조정 신청서를 수·위탁 분쟁 요청서와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서 서식으로 분리하여 규정 (안 제6조, 안 별지 제1호의2 서식, 안 별지 제1호의3 서식)** **② 벌점의 부과기준, 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제5조의4, 제7조, 별표) 삭제** **③ 벌점의 부과기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벌점기준에 대한 규제 재검토 규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제12조제2호) 삭제** ※ 의견 제시기간 : 2023/6/27(화)~8/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불공정거래개선과)로 제출	2023-06-27
공정거래위원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집단이 재단으로 있는 대학교 내 산업협력단 등이 설립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와 그 자회사가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것을 10년 동안 유예하여 중소기업으로서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지난날부터 계열회사로 편입돼 그간 중소기업으로서 받아오던 각종 혜택이 끊겨 연구기술개발 투자 및 기술의 사업화 활동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3-06-27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이에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중소기업 관련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산학연협력을 통한 연구기술개발 투자와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10년 동안 제외하던 유예기간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집단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제외하도록 함 (안 제5조 제2항 제4호)** ※ 의견 제시기간 : 2023/6/27(화)~8/11(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공정거래위원회(기업집단결합정책과)로 제출	
공정거래위원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노후소득보장 및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일부 예금에 대하여 현행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상품의 예금과 같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별도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상품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추가 (안 제3조 제4항, 제18조제3항 및 제7항제1호가목)** – '22.4월 신설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따른 예금등 채권에 대해서도 기존 확정기여형(DC형)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가입자(근로자)별로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② 연금저축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안 제18조제7항제1호나목)** –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에 있어서 중요한 연금저축(신탁·보험)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③ 보험상품 사고보험금에 대한 별도 보호한도 적용 (안 제18조제7항제1호다목)** –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되는 사고보험금(만기보험금은 제외)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2023/6/26(월)~8/7(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금융위원회(구조개선정책과)로 제출	2023-06-26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정무 위원회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정한 감사인 또는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에 의한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가 연속하여 6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감사인이 감사를 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피감기업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감사인 적격성 및 감사 품질의 저하, 감사 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며 기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외부 감사대상 회사로 하여금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를 초과하여 동일한 감사인을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함으로써 외부 감사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3항 신설 및 제11조제2항 · 제3항 삭제 등)**	2023 06-29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현행법에는 시간 · 비용 ·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익명처리된 개인정보는 이 법의 규율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인정보를 익명처리 할 경우 익명처리의 절차와 적정성 보장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대한 정의 규정을 추가하고, 익명처리에 관한 적정성 심사 및 익명처리의 적성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익명처리와 관련한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등)**	2023 06-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획재정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코로나19의 종료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가중되고 있어 해당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 역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96조의3제1항)**	2023 06-2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1인)」** 현행법령은 수입물품의 운송체계를 관리 · 감독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업자 등이 관세부과가 보류된 미통관 수입물품을 다른 세관 관서 또는 보세구역 등으로 운송하려는 경우 그 운송에 이용할 운송수단의 종류·번호, 운송통로 및 목적지 등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도록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은 보세운송업자가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운송수단이 아닌 다른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이 수입물품의 운송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 또는 승인받지 않은 운송수단으로 수입물품을 운송할 경우 운송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운송 중 물품을 바꿔치기하는 등 통관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세운송업자 등이 세관장에게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세운송하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수입물품의 운송체계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16조제3항 신설 등)**	2023 06-3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2023 06-3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그런데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의 시장점유율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안내와 공지사항을 제작 · 편성 · 송신하여야 하는 의무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 · 다양성 · 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3항)**	
문화 체육관광 위원회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며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미술저작물 등을 저작물의 예시로 들고 있음 만화 · 웹툰 · 애니메이션은 현행법상 저작물에 해당하나 저작물의 예시에 명확히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저작권 등록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어문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로 등록되고 있는 상황으로, 만화 관련 산업의 저작물 등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만화 · 웹툰 등의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화 · 웹툰 등에 대한 별도의 저작물의 예시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저작물의 예시에 만화 · 웹툰 등 만화저작물을 포함하여 만화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창작자들이 저작물을 적절히 등록할 수 있도록 하며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2023 06-28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달곤의원 등 10인)」**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생산 · 유통 · 소비 전 과정에 IT · BT · 로봇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서 코로나19 이후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 · 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면서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음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며, 우리 농식품산업 성장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우리나라는 로봇 · AI 등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새로운 식품뿐만 아니라 조리로봇 등 관련 장비의 수출 확대가 가능한 상황으로 수많은 청년 스타트업이 푸드테크에 진출하고 있고 성공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음 현재 미국 · EU 등은 정부 차원에서 푸드테크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푸드테크와 관련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2023 06-28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 · 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식품산업과 첨단 · 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 · 관리하도록 함 (안 제5조 및 제6조)** **③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 (안 제7조)** **④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 **⑦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15조)**	2023 06-28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운천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의 공사 · 유지 ·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전문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되,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나 주택과 같은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자본금 2억원 이상, 전기기사 등 전문 기술인력 10명 이상, 공용장비 12대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영세한 소규모 주택관리업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조건을 모두 갖추기 어려워 안전관리 업무를 위탁을 받을 수 없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2023- 06-26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2인)」**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인 경우 특허등록을 통해 「특허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으나 그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한 권리 또는 영업비밀인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배타적독점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같은 비등록 지식재산권을 부정경쟁행위로 통하여 탈취한 후 이를 특허 등록한 경우에는 마땅한 형사적 제재조치가 없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의 벌칙규정은 민사적 구제를 보충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처벌정도가 약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특히 양벌규정인 법인의 특허 침해죄의 경우 법인에 부과되는 벌금 액수가 침해한 개인의 벌금액과 비교하여 3배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경쟁행위를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특허출원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특허 침해에 대한 법인의 벌금액을 개인 침해 행위자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업비밀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9조 및 제230조제1호)**	2023 06-2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납품대금을 깎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영상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선요구 또는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요구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며, 공표 후 1개월이 경과한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러나 위탁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수탁 · 위탁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여 유용하는 등의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한 위탁기업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탁기업이 수탁 · 위탁거래에 관하여 사실상 합의하고 약정서를 아직 발급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기술자료를 유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수탁 · 위탁거래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개선요구, 시정명령 및 공표가 있었음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위탁기업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공정한 수탁 · 위탁거래 질서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2항 및 제41조)**	2023 06-2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수탁 · 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한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이 입은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기업이 배상하여야 하는 금액보다 기술자료 유용으로 인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이 더욱 큰 경우가 많아 기술탈취 사례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탁기업의 기술탈취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액의 한도를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위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배상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손해액의 5배로 상향함으로써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수탁 · 위탁거래 질서의 수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0조의2제2항)**	2023 06-30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6인)」**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활한 전기공급과 전기설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면서 기술기준에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른 기술기준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고압 전선로를 공중에 가설할 때 지표에서 1m 이상의 이격을 두되, 사람에게 위험을 줄 우려가 없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5만4천볼트 이상의 특고압 전선로를 이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전자파 노출 우려로 인한 주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특고압 전선로의 매설깊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고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전자파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 등과의 협의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7천볼트를 초과하는 특고압 전선로의 지중화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특고압 전선로를 설치하려는 자는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 · 허가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선로의 설치로 인하여 경제적 · 환경적 영향을 받는 주민과 학교 및 병원의 관계자 등과 미리 협의할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의 위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67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신설)**	2023 06-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외 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방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지방의 대도시와의 특화단지 지정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화단지 지정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인구소멸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3항제3호 신설)**	2023 06-29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육아휴직 급여를 대통령령에서 정하게 하고 있고 하한액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로 인해 동법 시행령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150만원과 70만원으로 상한액도 최저임금액 미만인 상황임 이에 따라 시행령에 월 통상임금의 8할까지 보장하고 있음에도 실제 시행령을 통한 특례조항으로 부모 동시 육아휴직 사용 등 인센티브를 얻은 가정이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하기 어려워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따르도록 하여 맞벌이 부부가 아닌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고용보험을 통해 국가가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70조)**	2023 06-28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후대응기금 운용관리규정」(기획재정부 고시)에서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운용 · 관리하도록 하며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2023 06-2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기후대응보증사업은 중소 · 중견기업의 사업성과 기술성 평가 외에도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 효과가 있는 제품·기술에 대한 탄소감축량을 산정하여 평가하는 사업으로 2022년 기준 900억원의 정부출연으로 1,500여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1조437억원의 보증을 지원하여 연간 454,000tCO2eq의 온실가스 감축성과를 나타냈었음 이는 약 360,000대의 휘발유 승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로 전기차 구입 시 최대보조금(니로, 아이오닉5 700만원)으로 환산하면 정부예산 액 2조5천억과 맞먹는 규모의 지원임 한편, 「국가재정법」에서는 정부가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후대응보증사업의 경우 법률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 근거하여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기후대응보증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기후위기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72조제3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함께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장에게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는 사업자 · 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再製造) 제품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해 · 세척 · 검사 · 보수 · 조정 · 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녹색제품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을 녹색제품의 범위에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고 다양한 지원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조속한 이행을 촉진하고자 함 (안 제2조의2제2호의2 신설)**	2023 06-3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입주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실내공기질 기준을 위반한 측정값이 도출될 경우 그 보완 책임은 시공자에게 부여될 것이므로, 시공자 자체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를 고려할 때, 현재의 직접 측정 방식을 측정 전문기관의 측정대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재 공동주택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기준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자에 대하여 측정값 조작 등의 지시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무규정의 규범력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의 경우에 보다 강화된 제재조치가 필요할 것임 이에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측정을 대행하도록 하되 그 현장에 입주자가 참관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대행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값 조작 지시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9조, 제14조, 제16조)**	2023 06-30
	•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10년동안 기록 · 보존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IoT 센서형 측정기 등 오염물질의 실시간 측정을 위한 기술 발달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장기간 우수하게 유지 · 관리하고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지정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 의무, 주기적인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기록 · 보존 의무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율적으로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 ·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12조의3 · 제12조의4 등)**	2023 06-30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토교통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등 10인)」**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현행법은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에 대한 교환 · 환불제도를 도입하여 신차 구입 이후 일정한 기간 내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교환 ·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차량이 인도된 때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레몬법을 먼저 도입한 미국의 주(州)들은 대부분 하자 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정하고, 제작사가 정해진 횟수 내에 완전히 수리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인도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음 또한 2019년 우리나라의 현행제도 시행 이후 2023년 3월까지 교환 · 환불 중재 신청이 접수된 하자차량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전체 2,000건 중 6개월 미만이 908건, 6개월 이상~1년 이내가 914건으로, 차량 인도 후 6개월 이후 1년 이내 발생한 하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자동차제작자등의 제조상 책임을 강화하고 자동차소유자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7조의3)**	2023 06-27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구제제도, 운송약관의 비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내 화장실, 조리시설 등 시설과 설비에 대한 위생점검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위생점검 기준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실제 위생점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항공교통이용자들이 위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일정한 위생점검의 기준 · 방법 · 절차에 따라 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분기별로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사업자의 위생관리에 관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항공교통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 신설 등)**	2023 06-30

3.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7/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25호 발간 -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	
	7/5(수)	금주의 서평 제634호 발간 - 인류의 여정 (저자 : 오데드 갤로어)	
	7/5(수) 15:00	제6차 「국가전략 콜로키움」 개최 -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지정학적 재편	국가전략 정보센터
예산정책처	7/7(금)	「NABO Focus 제60호」 발간 - 기초연금의 경제적 효과	의정관 417호
입법조사처	7/4(화)	「이슈와 논점」 발간 - 인공지능의 FATE(공정성, 책임성, 투명성, 윤리) 제고	

[별첨1] 제409회국회(임시회) 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정무위	7/4(화) 14:00	법안심사1소위	- 법안 심사
기재위	7/5(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및 상정 - 업무보고(기획재정부 등)
교육위	7/5(수) 14:00	법안소위	- 법안 심사
문체위	7/7(금)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현안질의
산자중기위	7/5(수) 10:00	전체회의	- 법안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등 소관 현안질의
예결위	7/6(목) 10:00	전체회의	- 간사 선임의 건

4.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3(월) 14:00	보건복지부의 정부위원회 내 노동자 배제, 노동시민사회의 대응과제	김영주·남인순·서영석·신동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3(월) 14:00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강성희·강준현·권성동·김성주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6/26(월) 14:00	[한-이탈리아 공동 국제심포지움] 메타버스와 윤리	국회신성장산업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7/4(화) 10:30	포털과 댓글 저널리즘 세미나	국민의힘 포털TF 등	국회 본관 228호
7/5(수) 10:00	미래 에너지 대전환의 열쇠 ESS 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7/5(수) 14:00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 정책토론회 - 미래 여성경제인을 위한 여성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한무경·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5(수) 15:00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박정하 의원실, 주택산업연구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6(목) 10:00	CF100, RE100의 대안인가?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등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6(목) 14:00	원전계속운전 주민 수용성 증진 세미나	한무경 의원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원회관 1소회의실
7/7(금) 14:00	디지털교육 확산 및 에듀테크 진흥방안 수립 정책 간담회	김병욱(국), 김한정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90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6/28(수)	금주의 서평 제634호 발간 - 인류의 여정 (저자:오데드 갤로어)	
	6/28(수)	「World&Law」 제2023-13호 발간 - 생성형 AI, 함께 살아가려면?	
입법조사처	6/26(월)	「이슈와 논점」 2105호 발간 - 한미 핵확장억제 전략 강화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전망	
	6/27(화)	「이슈와 논점」 2106호 발간 - 부사관 인력 충원 현황 및 개선방안	
	6/27(화)	「이슈와 논점」 2107호 발간 - 범죄피해자 공판기록 열람·등사제도 개선 방안	
	6/28(수)	「이슈와 논점」 2108호 발간 - 재정준칙 도입 논의 동향 및 쟁점	
	6/29(목)	「이슈와 논점」 2109호 발간 - 경계선 지능인의 현황과 향후 과제	
	6/30(금)	「NARS Brief 제9호」 발간 - 기후위기, 폐자원 리사이클링 “K-순환경제” 이행 정책토론회	

<국회의원실>

6/29(목)	제목	주최	장소
6/26(월) 14:00	**제2회 국회 섬유산업 혁신포럼** -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순환경제를 위한 발전방안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6/26(월) 14:00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윤미향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6/27(화) 10:00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철도망 구상 세미나 시리즈 #1** - 중부내륙철도망	소병훈·이종배 의원실, 대한교통학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7(화) 14:00	**K-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大토론회**	홍석준·이주환·이은주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의원회관 대회의실
6/27(화) 14:00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	장동혁 의원실, 한국지방자치학회 등	의원회관 7간담회실
6/27(화) 14:00	**디지털 대전환 시대, EBS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유기홍·박찬대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27(화) 14:00	**하반기 한우 수급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어기구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6/28(수) 10:00	**2023년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	이인선 의원실	의원회관 대회의실
6/28(수) 14:00	**역전세 등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정책개선 토론회**	김수흥 의원실, 한국공인 중개사협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6/29(목) 10:00	**복합적 경제위기, 복지국가 실현 위한 세법 개정 토론회**	이상민·진선미 의원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의원회관 3간담회실
6/30(금) 14:00	**인천 신도시 과대·과밀학급 해소방안 마련 토론회**	배준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5. 지난주 (6/26～7/2))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List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분야	내용
6/26(월)	금융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및 향후 대응방안
6/27(화)	형사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발표 및 주요 형사쟁점
6/27(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및 신규 정보교환 플랫폼
6/27(화)	중대재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관련 승소 사례
6/28(수)	소비재·유통업	소비재·유통업 뉴스레터 2023_Vol.2
6/29(목)	방송통신(TMT)	인공지능 관련 주요 법안 발의현황 및 정책 동향
6/30(금)	노동	현대차 손해배상 판결의 의미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광재** | 변호사 T. 02-316-1624 E. kjakim@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안현정** | 변호사 T. 02-316-1637 E. hjeahn@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건백** | 변호사 T. 02-316-4670 E. gbapark@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나인경** | 변호사 T. 02-316-7251 E. ikra@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 **서치원** | 변호사 T. 02-316-7225 E. cwseo@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